

「와삭바삭 통장」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와삭바삭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또는 MMDA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은 1인 1계좌로 만 35세 이하의 고객만 가능합니다.

제4조 이자지급

-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 (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1. 보통예금 : 매년6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저축예금 및 MMDA : 매년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①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필수요건의 월별 실적을 가입 익월부터 매월 평가하여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시 해당월의 익월 첫 영업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 항목의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 거래 시 월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신규 가입월 및 가입 익월에는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요건)

1. 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체크카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시
2.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시
3. 타인으로부터 월 10만원 이상 입금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1.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2.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3.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4.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5. 통장 재발행

- ②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특별요건의 실적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제시 시점 해당월 포함하여 6개월 경과월의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제5조 1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시에는 횟수제한 없이, 본항의 아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시에는 합계 총5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특별요건 실적은 증명시점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특별요건)

1. 봉사활동 6개월간 10시간 이상 증명 시
2. 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 증명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1.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2.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입출금거래내역 문자통지 서비스 (본 서비스는 특별요건 충족 시 6개월동안 횟수 제한없이 제공)

제6조 통장전환

만 36세가 되는 첫 영업일에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전환합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자동전환됨을 설명하고 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통장인자 또는 SMS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합니다. (단, 전환시점에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신규중단 시에는 수수료 면제통장 상품 중 하나로 전환해 드립니다.)

제7조 부가서비스

- ① 은행은 이 상품 가입일부터 이 통장 가입자가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본인의 배낭여행, 어학연수, 유학 관련 자금용도로 외국통화 매매 시에 매매마진율을 70%까지 우대 합니다.
- ② 은행은 이 상품 가입한 다음년도 첫 영업일 이후 고객이 아래와 같이 상품 신규하는 경우 금리 우대서비스를 1인당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1. 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여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늘~하나적금, 씨크릿적금, 바보의 나눔 적금을 3년제 이상 신규하는 경우 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 연 0.5% 우대이율 제공
 2. 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여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KEB하나은행 신용대출을 신규하는 경우 연 0.5% 우대이율 제공
- ③ 본조 1항의 서비스는 이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장 7년까지 적용되며, 2항은 본 상품 가입한 다음년도 첫 영업일로부터 최장 7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만 37세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적용)

<부칙>

본 약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 기 가입 계좌의 경우 10월 실적부터 평가하여 11월부터 본 약관의 우대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부칙1>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